

마이다스 디딤 거북이 40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펀드코드: EE636]

투자위험등급 5등급 [낮은 위험]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마이다스 거북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40% 이하를,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마이다스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관련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마이다스 디딤 거북이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 | | |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신탁 자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인 마이다스우량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및 마이다스거북이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권 및 주식으로부터의 자본이득과 이자·배당소득을 얻어 장기적인 가치상승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모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거나 지수선물을 매도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Long-Short 전략 등의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하여 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른 영향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추구하며, 채권 모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 | | | | |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추가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종류형, 모자형 | | | | | | | | | |

| 투자비용 | 클래스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 | | | |
|------|---------------------|--------------------------------|-------|------|-------------|---------------|---|-----|-----|-----|-------|
| |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합성 총 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 | | | | | 94 | 192 | 296 | 518 | 1,180 |
| | 오프라인-개인연금 (C-P1) | 없음 | 0.915 | 0.60 | - | 0.915 | 94 | 192 | 296 | 518 | 1,180 |
| | 온라인-개인연금 (C-Pe1) | 없음 | 0.615 | 0.30 | - | 0.615 | 63 | 129 | 199 | 348 | 793 |
| | 오프라인-퇴직연금 (C-P2) | 없음 | 0.835 | 0.52 | - | 0.835 | 86 | 175 | 270 | 473 | 1,077 |
| | 온라인-퇴직연금 (C-Pe2) | 없음 | 0.575 | 0.26 | - | 0.575 | 59 | 121 | 186 | 326 | 741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 포함))**을 의미합니다.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 신규로 설정되는 투자신탁으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 | | | | | | | | |
|--------------------|-----------------------------|--|--|--|--|--|--|--|--|--|

|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채권혼합형) (%) | | | | 운용경력 년수 | |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 운용규모 (억원)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 | 이천주 | 1971 | 책임-주식 (본부장) | 15 | 2,813 | 8.76 | 14.32 | | | 22년 | |
| | 김예리 | 1982 | 부책임-주식 (부장) | 26 | 9,374 | 7.34 | 14.71 | | | 11년 1개월 | |
| | 이호영 | 1987 | 부책임-주식 (차장) | 8 | 1,457 | - | - | | | 9년 7개월 | |
| | 기민수 | 1980 | 책임-채권 (본부장) | 40 | 74,751 | 7.43 | 15.32 | | | 13년 3개월 | |
| | 김민수 | 1982 | 부책임-채권 (부장) | 25 | 29,356 | 7.14 | 14.38 | | | 12년 7개월 |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 | | | |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 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
| 구 분 | | | | | | | |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 | | |
| 원본손실 위험 | | | | | | | |
| <p>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p> | | | | | | | |
| 금리변동위험 | | | | | | | |
| <p>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 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p> | | | | | | | |
| 증권 차입 매도 위험 | | | | | | | |
|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모펀드(마이다스 거북이 증권모투자신탁(주식))는 증권의 차입 및 매도를 통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지만, 예상과 달리 차입한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증권차입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단순 매수전략을 구사하는 전략에 비하여 원금손실의 범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경우, 이후 환매시 같은 증권을 매수하여 환급하여야 합니다. 증권의 가격은 이론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므로 증권차입에 따른 손실도 이론적으로 무한합니다. 또한, 차입한 증권에 대하여 대여기간 중에 대여자의 환수요청이 있을 경우, 급작스러운 증권의 매입 및 상환 등으로 인하여 포트폴리오 운용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권의 차입은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일시적으로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매도한 주식 반환을 위한 주식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차입비용 및 증권차입에 따른 담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 | | | | | | |
| 투자신탁 해지 의 위험 | | | | | | | |
| <p>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 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 | | | | | |
| ※ 추가적인 투자위험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매입 방법 | | 환매 방법 | | | | | |
| <p>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 | <p>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 | | | | |
| 환매수수료 | | 없음 | | | | | |
| 기준가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2px;">산정방법</td><td style="padding: 2px;">-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 <td style="width: 20%; padding: 2px;">공시장소</td><td style="padding: 2px;">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 | |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 | | | | |

| 과세 | 구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계좌 등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7-3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midasasset.co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집기간 |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10조 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효력발생일 | 2024년 10월 11일 | 준속 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편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Class)</th> <th colspan="3">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판매수수료</td> <td>수수료미장구(C)</td> <td colspan="2">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 rowspan="2">판매경로</td> <td>온라인(e)</td> <td colspan="2">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오프라인</td> <td colspan="2">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 </tr> <tr> <td rowspan="4">기타</td> <td>온라인슈퍼(S)</td> <td colspan="2">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 (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퇴직연금</td> <td colspan="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개인연금</td> <td colspan="2">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퇴직연금사전지정 운용(O)</td> <td colspan="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플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기관(F)</td> <td colspan="2">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body> </table> | | | | 종류(Class)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수수료 | 수수료미장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경로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기타 | 온라인슈퍼(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 (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개인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퇴직연금사전지정 운용(O)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플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기관(F) |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종류(Class)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수수료 | 수수료미장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경로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온라인슈퍼(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 (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직연금사전지정 운용(O)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플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F) |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